◉항공기상청공고 제2026-1호

「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2월 20일

항공기상청장

「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」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제주공항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 항공기상관측장비 운영 및 활용 인력 1명(7급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 00. 00. 공포, 2026. 00. 00. 시행) 및 「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(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호, 2026. 00. 00. 공포, 2026. 00. 00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항공기상청(참조: 기획운영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22382)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, 제2합동청사 2층(2F-0023)
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
- 전자우편: gotaekgu@korea.kr
- 팩스: 032-740-2807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(전화: 032-222-300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(http://www.kma.go.kr)의 「주요업무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」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